



▶ **Main Contractor**

“원청자”를 뜻하며 통상 대문자로 표시해 Contractor로 표기한다. 이에 대해 하청자는 Subcontractor라고 한다.

▶ **Maintenance Certificate**

“하자보수확인서”를 말한다. “최종완공확인서(Final Completion Certificate)” 또는 “최종 수락 확인서(Final Acceptance Certificate)” 등으로 표현된다. FIDIC에서는 Defects Liability Certificate라고 표현하고 있다. FIDIC 규정에 근거해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 ① Maintenance Certificate만이 공사의 완공확인 의 근거가 된다(Approval of the Works). 즉, Maintenance Certificate의 발급 이전까지는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 ② 하자보수기간(Maintenance Period) 종료 후 28 일 이내에 감독관(Engineer)에 의해 발급된다.
- ③ Maintenance Certificate의 발급 후라 하더라도 계약당사자의 미수행 의무(Unfulfilled Obligations)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 **Maintenance Period**

하자보수기간은 공사의 완공일로부터 계약상 특정기

간을 뜻한다. FIDIC에서는 Defects Liability Period라고 표현한다.

▶ **Man-Month**

이 개념에는 약간의 혼동이 있다.

- ① 인력을 중심으로 하여 1개월간의 연인원을 뜻한다는 개념(the person of input to a work for one month). 이 경우 60man-month라 함은 한달간 연투입 인력이 60명 이라는 뜻이다.
- ② 시간을 중심으로 한사람의 작업월을 뜻한다는 개념(the month of work done by one person). 이 경우 60man-month라 함은 한 사람이 60개월간 작업했다는 뜻이다. 즉, 1인을 기준으로 할 때, 60개월의 작업시간을 나타낸다.
- ③ 작업을 중심으로하여 한 사람이 1개월간 수행한 작업의 양을 뜻한다는 개념(the amount of work equal to the output of one person for one month). 이 경우 60man-month라 함은 한 사람의 60개월간의 작업 양을 나타낸다.

이중 ①의 개념은 적용에 무리가 있고, ②, ③의 개념이 통용되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 적용에 주의를 요한다. 즉, 시간의 단위와 작업량의 단위간의 구분은 쉽지 않다.

▶ Memorandum

- ① 메모, 비망록 : 이 경우 통상 memo로 줄여서 쓴다.(site memo : 건설현장에서 시공자와 감독관, 또는 발주처간 간단한 업무내용이나 기술관련 설명을 위한 서신의 일종)
- ② 각서 : 이 경우 Agreement의 성격이 있으나 법적 효력이 약하다는 데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Agreement의 체결 전 또는 후 일정내용에 합의하거나 변경할 경우 Memorandum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있다. 복수형은 Memoranda 또는 Memorandums를 쓴다.
ex) Memorandum Understanding : 양해각서

▶ Merchantile Occupancy

상품의 진열이나 판매를 위해 건물이나 상점, 시장 등을 사용하는 것

▶ Metes and Bounds = Boundaries

경계, 구획

▶ Minutes

회의록을 뜻하며 Minutes of Meeting으로 표현하는 게 일반적이다.

▶ Mock-up

건설세부사항의 연구나 외양의 결정 또는 작업수행을 검토하기 위해 설계과정에서 실물크기로 제작하는 견양(見樣)

▶ Module

기준치수, 기본단위

▶ Monthly Statement

“월별현황”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시공자의 계약이행

상황을 발주처와 감독관에게 월별로 제출하는 문건이다.

이 Statement에는 계약사항과 함께 공정현황, 인력, 자재 및 장비 뿐 아니라 기성수령현황, 발주처나 감독관의 재시공자 미결사항까지도 명시된다. 그러므로 이는 발주처에게 계약의 현재위치를 알려주는 역할(시공자의 의무)과 시공자의 향후 Claim에 대한 근거로서의 역할(시공자의 권리), 즉 약면성을 띄고 있는 문건이다.

▶ Mortgage

저당, 담보 저당권

▶ Multiple of Direct Personnel Expense

전문적인 서비스에 대한 보수지급방법이며, 급여와 관례적인 지급 등을 포함한 전문기술인력의 직접비에 합이된 요율을 곱해 계산한다.

▶ Nominated Sub-Contractor

어떤 작업의 수행이나 설비, 자재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 발주처나 감독관이 선정 또는 승인한 하도급자로서 그 비용이 임시비(Provisional Sum)로 총당되며, 시공자가 계약조건에 따라 상기 항목을 그들에게 하도급토록 강제된 하도급자를 뜻한다.

이들은 통상 계약체결 이전에 지명되지만, 시공자가 그들과의 하도급에 대해 합리적인 반대사유를 제시할 때나, 하도급자 자신이 하도급을 포기할 때는 본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지정된 하도급(Nominated Sub-Contractor)과 관련하여 발주처에 대한 계약상 책임과 의무를 Declined Sub-Contractor(포기한 하도급자)가 부담해야 한다.

그러므로 Nominated Sub-Contractor는 설령 시공자와의 하도급계약을 포기한다 하더라도 Nominated Sub-Contract Work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 하도급과 관련된 비용(하도급비와 하도급공사에 투입된 시공자의 인력에 대한 비용)은 계약사항의 변경(M0dification)관련 규정이 적용되어 계약금액이 조정된다. ◉